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 21.) 상정
- 제1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윤 인 상)

가. 제안이유

- 기업지원 관련 각종 조례 중에서 유사성격과 기능을 가진 조례 및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업환경 등의 구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기업사랑 추진방향의 설정 및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기업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부천중소기업대상 시상의 종류 및 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관내 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 지원금의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8호
의결 년월일	2009. 1. 22. (제149회)

제출년월일 : 2009. 1.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기업지원 관련 각종 조례 중에서 유사성격과 기능을 가진 조례 및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기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업환경 등의 구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기업사랑 추진방향의 설정 및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기업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부천중소기업대상 시상제의 종류 및 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바. 관내 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 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 지원금의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을 사랑하는 풍토 조성과 지역특화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사와 지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를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반영된 산업을 말한다.
5.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의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6. “선도산업”이란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8.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9.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

및 신규 창업자를 위하여 공용장비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0. “벤처기업관련시설”이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그 밖에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항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의 마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유치, 우수인력의 양성 및 자금의 지원 등 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2장 기업사랑 및 지원

제1절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기업사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의 설정 및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부천중소기업대상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관련시설 입주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
 2. 부천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2명
 3.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기관의 임원
 4. 기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저조한 활동 및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기업활동의 지원

제10조(관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시장에 대한 관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의 발굴·홍보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11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상호 간의 공동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12조(인력양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지 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 또는 부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

제15조(선정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한다.

1. 시에서 수여하는 부천중소기업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3. 경제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업 관련 표창 중에서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하여는 3년간 제16조에 따른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및 예우)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특례의 우선 지원
2.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자격 우선 부여
3. 각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4. 체육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의 이용료 감면
5. 시정소식지 등의 무료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7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과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로 규제 중인 기업의 경우
3.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 중이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8조(기업인의 날 지정) 시장은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의욕의 제고 및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행사개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
2.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 및 워크숍
3.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제4절 부천중소기업대상

제20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부천중소기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단체시상과 개인시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단체시상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시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1. 단체시상: 창업·생산성 향상·기술혁신·해외시장 개척·경영난 극복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
2. 개인시상: 생산성 향상·기술혁신·해외시장 개척·경영난 극복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단체시상 5개 및 개인시상 5명 이내로 한다.

제21조(시상권자) ① 부천중소기업대상은 시장이 시상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민간경제기관·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대행기관·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상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경제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중소기업대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역 민간경제기관·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 관내에서 3년 이상(창업분야는 1년 이상을 말한다) 경영 중인 중소기업

2. 근로자: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상시근로자

② 수상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구청장·동장,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 시 단위 노동단체의 대표, 지역신용보증기관장 및 기업의 대표 등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적심사 등) ① 공적심사는 수상후보자추천서를 통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의 평가기준, 심사방법, 시상시기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천중소기업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선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25조(선도산업의 지정) 시장은 관내 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산업(금형·조명·로봇·부품·소재산업에 한한다)
2. 지식기반산업
3. 벤처기업

제26조(지원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도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기관·대학·조합과 기업의 유치 및 지원
2. 선도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4. 시험·검사·측정·설계·장비활용에 관한 지원
5. 전시·보관 등을 위한 공간의 설치·운영
6. 기술자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의 설치·운영
7.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인프라 구축 및 홍보
8. 공유재산의 제공과 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지원
9.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단지의 조성과 연구기관의 설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7조(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조합의 청사 또는 지원센터
2. 검사·시험 및 측정 관련 시설
3. 기술자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4. 공동연구센터·벤처기업관련시설과 창고·전시실·공용 기기실·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5. 그 밖에 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8조(공동연구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협동화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대학, 연구기관·단체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연구기관·단체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0조(지원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선도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대학, 연구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기존의 지원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31조(벤처기업관련시설 입주기업의 선정) ①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관내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 다만, 관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을 모집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평가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주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기업

2.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기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④ 시장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승인 및 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사업

2. 기업애로상담 및 정보제공

3.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항

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운영하며, 시장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나 이 지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관련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신제품개발 등의 연구사업
3.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34조(준용) 시 지원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육성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고취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2002.12.30, 2006.3.3, 2007.4.6>

1. ~ 5의3. (생략)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본조신설 2003.6.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개정 2007.8.3>)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 ③ (생략)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8.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법 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 또는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7.4.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 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4.18>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 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횡수별로 당해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횡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 ⑦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4.18>
-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8.4.18>

○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립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1.12>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외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7.11.12>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7.11.12>

(폐지 조례)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01. 09 조례 제2201호

개정 2007. 11. 15 조례 제22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기업”이라 함은 시 안에 본사·지사 또는 기타 사업장 등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 3.“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및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사랑추진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기업사랑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업사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우수선도기업, 세계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의원 2인
4. 시 소속공무원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업활동 지원

제12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입지 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및 제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업민원 1회방문처리 지원단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민원 1회방문처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시 변호사·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및 예우

제18조(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는 지원 및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수여하는 부천중소기업대상, 벤처기업 우수제품 대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2.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

3.경제관련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시장 또는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3년간 지원 및 예우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종류)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우선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체육공원·공영주차장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4.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5. 시정소식지 등 무료배부 및 제공
6. 각종 기술지원 사업에 가점부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0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 하는 경우
4. 기타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5장 기업인의 날

제21조(기업인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세 번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1.15>

제22조(기업인의 날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한 시상 및 간담회
2.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3. 성공 기업인의 사례발표회 및 신제품 발표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신설 2007.11.15>

제23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04. 02 조례 제1823호

전문개정 2007. 01. 09 조례 제22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산업 등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우리시를 국내·외 지역특화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관산업”이라 함은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 산업 등 제작에 관련 있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조합·기업체 유치 및 운영
2. 시험검사·설계지원·장비활용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3.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시험검사·설계·측정설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5.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체·대학·연구소 및 공동기술개발 사업
6. 지역특화산업의 단지조성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산업관련 연구기관·조합의 청사 및 공용의 검사실·시험실·측정실
2.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장
3. 보관창고 및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부대시설
4.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물의 운영) ①시장은 제4조에 규정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 재산을 특화관련 연구기관·단체·조합·법인에게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지역특화산업을 시의 중점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각 3인
4. 시의회 의원 2인
5. 시 소속 공무원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특화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1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금형·조명·로봇 및 부품소재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의 육성에 관련된 사항
2. 특화산업의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4.02.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00. 09. 25 조례 제1779호

개정 2003. 04. 10 조례 제1933호

개정 2005. 06. 10 조례 제2093호

개정 2007. 01. 09 조례 제22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식기반산업" 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의4호,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상산업과 그와 연관된 만화·캐릭터·팬시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및 설치
2. 산·학·연·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3. 지식기반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행사의 기획·홍보·실행에 관한 사업
4.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5. 각종자료의 수집, DB구축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6.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 관련 연구기관
2. 지식기반산업 관련 전시실
3.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실
4. 지식기반산업 공용기기실
5. 지식기반산업 정보실
6. 기타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부천시 공유재산(이하 "시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사용료) 제5조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7.01.09>

제5조의3(지원) ①시장은 제5조에 의해 사용을 허가받은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 보유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내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조성하는 연구동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4. 10]

제6조(공동연구센터의 운영) 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협동화 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대학·연구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와 공동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동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용자) 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제8조(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 ①시장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권고, 심의, 건의 등을 위하여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06.1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식기반산업업무 담당국장과 시의회 의원, 지식기반산업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5.06.1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06.10>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혁신체제 육성관련 사업
2. 지식기반산업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기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5.06.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신설 2005.06.10>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5.06.10>

제12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2005.06.10>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06.10>

제14조(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06.1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09.25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0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중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을 "중소·벤처기업"으로 한다.

제1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5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8조중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제20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3. 04. 10 조례 제1932호

개정 2005. 06. 10 조례 제2093호

개정 2007. 01. 09 조례 제22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공용장비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및 기타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시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3.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4.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5.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 ①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부천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②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한 기한이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허가의 절차등)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 및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제9조(사용료등) ①시 소유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천시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입주기업 지원사업
2. 기업애로상담, 정보제공
3.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4. 기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

③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며, 시장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나 촉진지구내에 있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신제품 개발등의 연구개발사업
3.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자의 선정
2.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3.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4. 삭제<2005.06.10>
5. 삭제<2005.06.10>
6. 기타 중소·벤처기업의 유치·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01.09>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06.10>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1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3. 4. 10 조례 제19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벤처기업관련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입주기간은 기체결된 기간으로 하며,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의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

제정 2002. 04. 10 조례 제1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부천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시상의 종류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1. 단체(기업체): 창업분야,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경영난극복분야, 기타 필요한 분야
2. 개인(근로자):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경영난극복분야, 기타 필요한 분야

②시상자 수는 단체 5개 업체이내, 개인 5인이내로 한다.

제3조(시상권자) 부천중소기업대상은 시장이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경제 기관(단체)의 장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 기관(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체: 관내에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중소기업체(다만,창업분야는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2. 근로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5년이상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②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동장,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시단 위노동단체대표, 시단위 소비자단체 대표, 지역신용보증기관장,기업의 대표(이하 "추천권자" 라 한다)가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는 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③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천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업무대행 기관(단체)의 부기관장이 된다. 다만,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무원, 학계 및 중소기업 관련전문가·기업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수상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공적심의) ①공적심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서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자격과 공적내용을 심의한다.

②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상공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방법 및 부상) ①수상기업체와 개인에게는 각각 상패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

②수상자의 시상금은 기업체 200만원, 개인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예산의범위안에서 시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대행) 시장은 시상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 경제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친중소기업대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역 민간경제 기관(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특전) 수상기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 수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2.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